수도법과 4대강 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차이점

허 봉 조

낙동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

☎ 055-211-1761, hbj0013@me.go.kr

「수도법」과「〇〇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상수원의수질개선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경부(수도정책과)에서 국고보조금 확정과 집행, 결산 및 사후관리 등 업무전반을 추진하고, 「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4대강 유역환경청에서 주민지원사업비 확정, 집행, 결산 및 사후관리 등 업무전반을 추진하여 왔으나.

「수도법」에 의한「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 위임사무」가 환경부 고시 제2006-98호 (2006. 6. 26)에 의거 2006. 9. 1일부터 유역(지방) 환경청으로 위임되고, 유역환경청의 국고보조사무 담당부서가 지역협력과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4대 강 유역환경청(지역협력과)의 업무가 근거 법과 대상 지역, 대상자, 사업비 배분기준 및 예산 등 근간을 전 혀 달리하는 2개의 주민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됨으로써.

「수도법」과「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동 위임사무를 처음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 및 대상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지자체) 담당자의 혼란과 업무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거 법을 달리하는 2개 주민지원사업의차이점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특히, 관할구역에 있어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7개 유역(지방)환경청이, 「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4개 유역환경청이 담당을 함으로써 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서로 다른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등 이에 따른 민원인과 공무원, 환경청과 관리청간의 혼선이 우려되며, 사업계획 수립·시행절차가 다른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면관계상 더 상세한 자료를 싣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 환경청 지역협력과(☎ 055-211-1761)로 전화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기 고 문I

■ 『수도법』과 『특별법』의 차이점

구 분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대강 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근 거	수도법 제6조의2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예 산	환경개선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재 원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 위안에서 국고 보조	수계관리기금 출연
환경부주관부서	수도정책과	유역제도과
법령 제ㆍ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
대상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지방상수도 보호를 위한 지역 포함)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댐주변 지역, 자율개선지역 등(수계별 특성에 따라 차이 가 나며, 지방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
대 상 자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당해 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 지 또는 제한으로 당해 구역안에서 생 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가. 법 시행일 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 (또는 댐 건설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오며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나. ② 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자다. ②목 및 ①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비배분	보호구역별로 별도 배분 - 인구수와 토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 하되, 지원비율은 보호구역별로 지역특성 에 맞게 조정	관리청별로 배분 - 주민지원대상 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 - 주민지원대상 지역별 주민 1인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 - 자율적수질개선지역은 별도 방법 적용
업무범위	환경부 : 예산 확정 유역(지방)환경청 : 사업계획 수립, 예산의 집행, 결산관리, 재정집 행 점검반 구성 · 운영 유역청(지역협력과), 지방청(환경관리과)	유역청(지역협력과): 사업비 배분 확정, 사업계획 수립, 사후관리 등 지도· 감독 유역청(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관리